

## 원자력전용품목(Trigger List Items) 수출시 국내 규정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 Analysis on the problems of exporting Trigger List Items and Implementing Export Control Regulations

김종숙, 김병구, 이종욱, 이재성, 민경식  
한국원자력연구소

#### 요약

국내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 관련 규정은 대외무역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가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 동 공고의 제53조는 원자력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원칙을 규정하고 그 내용은 원자력비확산 체제 관련 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는 수출통제 지침으로서 품목의 수출시 수입국 정부의 공식보증, 재이전 사전동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3조의 이행시 문제점은 원자력전용품목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s)으로 수출할 경우이다. 본 논문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의 수출시 제53조의 규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 수출통제 지침의 고찰 및 이들 국제 지침의 국내 규정예의 도입과정등을 살펴봄으로써 원래의 수출통제 원칙의 기본 방침을 국내 규정에 되살려 허가권자와 국내 기업 모두에게 이행가능한 규정으로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

## NSG 실무작업단의 활동 현황과 국내 수출통제 체제에의 영향에 대한 고찰

### Review on the Current States of NSG Working Groups Activities and Their Impacts to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Our Country

김종숙, 이종욱, 이재성, 민경식  
한국원자력연구소

#### 요약

원자력 수출통제를 통해 핵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NSG내의 여러 실무작업단활동 현황 및 작업 결과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실무작업단에서의 작업 결과들이 우리나라 원자력수출통제 체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들 각 실무작업단의 활동 결과 혹은 권고사항들은 원자력 관련 물질, 장비, 설비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NSG는 이중용도체제(Dual-Use Regime)를 중심으로 부속서 실무작업단, 부품 실무작업단, 투명성 실무작업단 등 다수의 실무작업단이 활동중이다. '95년 NSG 가입이후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 관련 법이 NSG의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국으로서 의무 준수 관점에서 볼 때, 국제적인 원자력 관련 장비, 기술 등에 부과되는 수출통제 추세를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갈으로써 핵비확산에 대한 일관성있는 우리나라의 방침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